

# 서울특별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박기재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2464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 : 2021년 05월 27일  
발 의 자 : 박기재, 권수정, 김경영,  
김경우, 김제리, 김호진,  
김화숙, 문병훈, 이영실,  
이정인, 조상호 의원(11  
명)

## 1. 제안이유

- 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」 개정에 따라 「건강가정기본법」 및 「서울특별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」를 근거로 설치·운영 중인 서울특별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사회복지시설로 규정되었음.
- 이에 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 등에 관한 규정을 사회복지시설에 맞춰 개정하려는 것임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서울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민간위탁기간을 5년으로 함. (안 제15조 제2항)
- 나. 민간위탁 관련 그 밖의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를 준용하도록 규정함. (안 제15조제3항)
- 다. 센터 시설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·감독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함. (안 제16조)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건강가정기본법」, 「사회복지사업법」 및 동법 시행령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다. 기타 : 신·구조문대비표

## 서울특별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”를 “「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”로 한다.

-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,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한 차례에 한해 재계약을 할 수 있다.

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6조(지도·감독 등) 시장은 센터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시설 및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지도·감독을 하며,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고, 센터의 수탁자는 지도·감독 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.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          행	개           정           안
<p>제15조 (운영의 위탁) ① (생략)</p> <p>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사무의 종류·범위 등은 따로 시장이 정한다.</p> <p>③ 그 밖에 민간위탁과 관련한 규정은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를 준용한다.</p> <p>제16조 (보고 및 조사)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할 경우에는 센터장에게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, 관계 공무원에게 하여금 장부 또는 서류를 조사·검사하게 할 수 있다.</p>	<p>제15조 (운영의 위탁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,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한 차례에 한해 재계약을 할 수 있다.</p> <p>③ ----- ----- 「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-----.</p> <p>제16조(지도·감독 등) 시장은 센터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시설 및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지도·감독을 하며,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고, 센터의 수탁자는 지도·감독 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.</p>